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6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고동진 · 임종득
서미화 · 김소희 · 김선교
박덕흠 · 서천호 · 박준태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의 ‘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’에 따르면,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,528명,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, 작품발표 · 전시 ·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,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제14조 삭제)

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).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) 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(이하 “예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예술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예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예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예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
2.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
3.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, 취업알선, 취업 후 적응 지도

4.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
 5.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성화 및 홍보 지원
 6.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
 7.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 8.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류, 협력 및 연구사업
 9.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
 10. 그 밖에 예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예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정부는 예술원의 운영과 제5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(이하 이 조에서 “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”이라 한다)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

예술원은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재산과 권리·의무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권리·의무로 본다.

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행한 행위로,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임직원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4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</u>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에</u> <u>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</u> <u>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</u> <u>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</u> <u>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</u> <u>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</u> <u>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사업을 수행한다.</u> <u>1.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</u> <u>은 사업</u> <u>2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</u> <u>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</u> <u>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업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</u> <u>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</u> <u>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</u> <u>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</u> <u>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</u> <u>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4조의2(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) 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(이하 “예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예술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예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예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예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

2.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

3.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, 취업알선, 취업 후 적응지도

4.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

5.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성화 및 홍보 지원

6.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

7.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
8.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류, 협력 및 연구사업

9.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

10. 그 밖에 예술원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⑥ 예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

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정부는 예술원의 운영과 제5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